

## 노무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는 ①계약 기간, 계약의 변경, 보수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 계약 조건, ②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③계약 해지, 손해 배상, 분쟁해결 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제정한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는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①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규정을 추가했고, ②위·수탁자의 책무, 고객정보관리·영업비밀준수 등 계약당사자 간 지켜야 할 사항을 포함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표준계약서의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개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으며, 표준계약서 전문과 활용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공통 표준계약서 안내

2.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 안내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팀 장	윤혜영 (044-202-7070)
	디지털노동대응TF	담당자	사무관	김서원 (044-202-7072)



# 노무제공자 공통 표준계약서

## 배경

- 급속한 디지털화, 비정형 계약관계 증가 등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 증가 추세
- 현실적으로 대등하지 못한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간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계약 체결 관행 형성을 지원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

## 주요 내용

 <p><b>목적</b></p> <p>상호대등한 관계에서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 규정</p>	 <p><b>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b></p> <p>수탁인의 책임하에 위탁업무 수행</p>	 <p><b>계약기간</b></p> <p>계약기간 명시적으로 규정, 계약 종료 시 사전에 의사 표시</p>	 <p><b>수수료 또는 보수의 지급 등</b></p> <p>수수료 등 기준 명시, 지급명세서 교부 의무 등</p>
 <p><b>계약의 변경</b></p> <p>계약 변경 시 서면으로 합의 또는 동의 필요</p>	 <p><b>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b></p> <p>우월한 경제적 지위 활용 금지, 수수료 등 전액 지급</p>	 <p><b>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b></p> <p>수탁자의 사생활 자유 침해 금지, 차별 금지 등</p>	 <p><b>정보이용 및 정보제공</b></p> <p>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제공, 계약목적 외 사용 금지</p>
 <p><b>계약의 해지</b></p> <p>상호합의 후 계약 해지 가능, 시정요구 후 계약 해지 및 즉시 해지 규정</p>	 <p><b>손해배상</b></p> <p>손해 발생 시 귀책사유에 따라 배상</p>	 <p><b>분쟁의 해결</b></p> <p>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거래 관행에 따름</p>	 <p><b>안전보건 조치 및 사회보험 가입</b></p> <p>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및 사회보험 가입</p>

## 기대효과

노무제공계약 체결 시 표준이 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 형성을 지원하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표준계약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http://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

### 배경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에서의 상호 대등한 당사자 간 계약 체결 관행 형성을 지원하고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 실태, 기업·종사자 요구사항, 직종의 특징 등을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제정

###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원 특징

지국(지역) 단위로 방문점검 업무를 배분하며, 방문점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부분 방문판매 업무도 병행, 일반적으로 사무실 출·퇴근 없이 개인 단말기로 업무 수행 체크·관리

### 주요 내용

 <p><b>목적</b></p> <p>상호대등한 관계에서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 규정</p>	 <p><b>위탁업무의 내용</b></p> <p>①가전제품 방문점검 업무, ②가전제품 방문판매 업무, ③그 외 부수적 업무</p>	 <p><b>계약기간</b></p> <p>계약기간 명시적으로 규정, 계약 종료 시 사전에 의사 표시</p>	 <p><b>수수료 또는 보수의 지급 등</b></p> <p>수수료 등 기준 명시, 지급명세서 교부 의무 등</p>
 <p><b>계약의 변경</b></p> <p>계약 변경 시 서면으로 합의 또는 동의 필요</p>	 <p><b>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b></p> <p>우월한 경제적 지위 활용 금지, 수수료 등 전액 지급</p>	 <p><b>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b></p> <p>수탁자의 사생활 자유 침해 금지, 차별 금지 등</p>	 <p><b>고객정보관리 및 영업비밀 준수 등</b></p> <p>고객정보 및 영업자료 계약목적 외 사용금지, 계약 종료 시 취득자료 폐기 등</p>
 <p><b>위탁자의 책무</b></p> <p>고객정보, 제품 관련 정보, 기본적인 물품 위탁 또는 제공</p>	 <p><b>수탁자의 책무</b></p> <p>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업무 수행, 그 결과를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통지</p>	 <p><b>고객정보관리 및 영업비밀 준수 등 대여물품 관리·반환</b></p> <p>업무처리 범위 내 고객정보 또는 영업정보 활용, 계약 종료 후 대여 물품 반환</p>	 <p><b>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 보호</b></p> <p>수탁자에게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 및 피해 발생 시 필요한 보호조치</p>
 <p><b>계약의 해지</b></p> <p>상호합의 후 계약 해지 가능, 시정요구 후 계약 해지 및 즉시 해지 규정</p>	 <p><b>손해배상</b></p> <p>손해 발생 시 귀책사유에 따라 배상</p>	 <p><b>분쟁의 해결</b></p> <p>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거래 관행에 따름</p>	 <p><b>안전보건 조치 및 사회보험 가입</b></p> <p>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및 사회보험 가입</p>

※ 표준계약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http://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